

법인합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합병 하려는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합병 상대방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합병일				
	합병 사유				

「철도사업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 법인의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1부 2. 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철도사업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합병계약서 사본 1부 5.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결정서 사본 1부	수수료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처 리 절 차

